

日帝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上)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变천사(3)—

金 英 宇

(公州大 教育學科)

韓國 近代 高等教育制度 变천사

1. 開化期의 高等教育 제도
2. 日帝 초기의 高等教育 제도
3. 日帝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上)
4. 日帝 중기의 高等教育 제도(下)
5. 日帝 말기의 高等教育 제도

1. 專門學校의 制度 개요

朝鮮總督府는 1922년 2월에 朝鮮教育令을 개정하면서 高等教育 기관으로 專門學校와 大學을 두도록 하고, 具體적인 教育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1922년 3월에 專門學校規程을 제정하여 本規程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는 바, 基設의 官立專門學校는 新令에 의하여 설립된 專門學校로 간주하는 한편, 基設 관립전문학교 在學生은 계속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教育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 제2차 朝鮮教育令 公布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私立專門學校는 당분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22년 3월 7일자 朝鮮總督府令 제21호로 제

정된 ‘公立・私立專門學校規程’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① 設立主體

필요한 경우 道地方費로 專門學校를 설립할 수 있고, 私人도 專門學校를 설립할 수 있는 바, 전자를 公立專門學校, 후자를 私立專門學校라 함(제 1 조).

② 設立認可申請

專門學校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 2 조). 즉, 目的・명칭과 위치・生徒定員・開校年月日・學則・校地・校舍・기숙사 등의 平面圖와 음료수의 定性分析表・경비 및 유지 방법 등이다.

③ 教員資格

專門學校 教員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제 8 조).

ㄱ. 學位를 가진 자

ㄴ. 大學 졸업자, 大學에서 시험에 합격하여 學士 칭호를 얻은 자 또는 官立學校 졸업자로 學士 칭호를 얻은 자

ㄷ. 조선총독이 지정한 자

1) 朝鮮總督府官報 제2867호(1922.3.7.).

근. 조선 총독이 인가한 자.

④ 入學資格

美術學校와 音樂學校의 입학 자격은 中學校나
高等女學校 또는 이에 준하는學校의 제3학년
수료 정도 이상으로 함(제10조).

⑤ 學生 정계와 退學

學校長은 教育上 필요가 있는 경우 學生에게
정계를 가할 수 있고(제12조),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게 退學을 命함(제11조).

ㄱ. 性行이 不良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것
으로 인정된 자

ㄴ. 學力이 劣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ㄷ. 연속 1년 이상 결석한 자

ㄹ.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1개월 이상 결석
한 자.

2. 官立專門學校의 制度 개요

1922년부터 1938년까지 제2차 朝鮮教育令 施行期에 해당하는 日帝 中期에 있어 고등교육 기관인 官立專門學校로 京城法專, 京城醫專, 京城高工, 水原農林, 京城高商 등 5개교가 있었다. 조선 총독부는 1922년 3월에 조선 총독부 제학교 관제를 제정하여 官立專門學校의 직원으로 學校長, 教授, 生徒監, 助教授, 서기 등을 두어 교수·조교수는 生徒의 教育을 장하고, 生徒監은 生徒의 훈육을 장하도록 하였다.²⁾ 조선 총독부는 또한 각 관립 전문학교별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는 바, 官立專門學校別로 본 制度의 개요를 이하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京城法學專門學校

1922년 4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49호로 제

정된 京城法學專門學校規程³⁾에 의하면 本校의 수업 연한은 3년이고, 學科目은 수신·국어·영어·법학통론·현법·행정법·민법·상법·파산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국제법·경제학·재정학·상업학·연습·체조 등이다. 選科生과 研究生 제도를 두어 本校의 學科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을 선택 尋修하고자 하는 자를 선과생으로 入學시키고, 本校 졸업자로 더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研究生으로 2년 이내 在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本校에 特科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1925년 4월 7일자 조선총독부령 제43호로 京城法學專門學校規程을 개정하여 本校의 學科目 중 法學 관계 학과목을 더욱 세분화하였다.⁴⁾

조선 총독부는 1928년 6월 18일자 조선총독부령 제38호로 경성법학전문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學科目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⁵⁾, 1937년 3월 27일에도 조선총독부령 제19호로 本校의 규정을 개정하여 學科目을 일부 개정하였다.⁶⁾

한편,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입학 자격을 보면 本科는 中學校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전문학교 입학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이고, 特科는 16세 이상의 조선인으로 4년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다.⁷⁾

2) 京城醫學專門學校

1922년 4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50호로 제정된 京城醫學專門學校規程⁸⁾에 의하면 本校의 수업 연한은 4년이고, 學科目은 수신·국어·독어·영어·化學·解剖學·조직학·生理學·醫化學·위생학·미생물학·病理學·약물학·내과학·외과학·소아과학·외부과·이비인후과·안과학·산과부인과·정신병과학·치과학·法醫學·

2) 1922.4.1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 호의.

3) 상동.

4) 조선 총독부 관보 제3790호(1925.4.7).

5) 동 제440호(1928.6.18).

6) 동 제3058호(1937.3.27).

7) 「生徒募集」(京城法學專門學校), 조선 총독부 관보 제3414호(1923.12.28).

8) 1922.4.1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 호의.

체조 등이었다. 또한 本校에 選科生과 研究生 제도를 두고, 特科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本校의 입학 자격을 보면 本科는 신체 건강, 品行方正, 身元 확실한 만 17 세 이상의男子로 中學校나 5년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시험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하고, 特科는 국어(日本語)를 상용하지 않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學歷이 있는 자로 하였다.⁹⁾

本校에서는 1926년 8 월 10 일자 조선총독부령 제67호로 경성의학전문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學科目을 부분적으로 바꾸었다.¹⁰⁾

조선 총독부는 1928년 5 월 28 일자 勅令 제97호로 朝鮮諸學校官制를 개정하여 京城醫學専門學校에 附屬醫院을 둘 수 있게 하였다.¹¹⁾ 이에 따라 本校에서는 1928년 6 월 1 일자 조선총독부령 제37호로 경성의학전문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부속 의원은 교수와 연구의 目的으로 환자의 진료 및 간호부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장하고, 부속 병원의 환자 치료는 관비나 사비로 하며, 간호부의 양성에 관한 규정은 校長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첨가하였다.¹²⁾

1928년 5 월 28 일자 勅令 제97호와 같은 해 6 월 1 일자 조선총독부령 제37호에 의거하여 1928년 6 월에 京城醫學専門學校에 附屬醫院이 설치되고, 1929년에 간호부과가 개설되어 學生을 모집하여 간호원 양성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 바, 간호부과의 入學資格은 16 세 이상 25 세 이하의 女子로 高等小學校 또는 普通學校高等科 卒業者나 이와 동등 이상의 學歷을 가진 자로 배우자가 없고 家事의 係累가 없는 자로 하였다.¹³⁾

京城醫學専門學校는 同校 附屬醫院의 간호부과를 1935년에 看護婦養成所로 개편하여 간호원 양성 교육을 계속 실시하였다.¹⁴⁾

조선 총독부는 1933년 7 월 8 일자 朝鮮總督府令 제70호로 京城醫學校規程을 개정하여 학과목 중 〈藥物學〉을 〈藥理學〉으로 변경하였다.¹⁵⁾

3) 京城高等工業學校

조선 총독부는 1922년 3 월에 제정한 朝鮮諸學校官制¹⁶⁾에 의거하여 종전의 京城工業専門學校를 京城高等工業學校로 개편하고, 附屬工業傳習所는 京城工業學校로 독립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경성고등공업학교는 1922년 4 월 1 일자 조선총독부령 제51호로 京城高等工業學校規程¹⁷⁾을 제정하여 工業에 관한 고등교육을 계속 실시하였는 바, 本校는 3 년제로 紡織學科, 應用化學學科, 土木學科, 건축학과, 鎳山學科를 두고, 교과목은 수신·국어·영어·수학·물리학·공업경제·체조 등의 과목은 공통으로 과하고 學科別로 전공 교과를 과하였다. 本校에도 選科生과 研究生 制度를 두고, 特科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本校의 입학 자격을 보면 本科는 男子로 中學校나 5년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로 하고, 特科는 日本語를 常用하지 아니하는 男子로 4년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로 하였다.¹⁸⁾

경성고등공업학교는 1924년 8 월 21 일자 조선총독부령 제66호로 本校의 규정을 개정하여 學科別 學科目를 부분적으로 개편하였다.¹⁹⁾

조선 총독부는 1923년 7 월에 조선 총독부 私立學校敎員資格規程에 의거하여 本校 졸업생에

9) 「生徒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2857호(1922.2.23).

10) 조선 총독부 관보 제4192호(1926.8.10).

11) 동 제426호(1928.6.1).

12) 1928.6.1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 호의.

13) 「生徒募集」(京城醫學専門學校附屬醫院), 조선 총독부 관보 제794호(1929.8.23).

14) 조선 총독부 관보 제2407호(1935.1.23).

15) 동 제1948호(1933.7.8).

16) 勅令 제51호.

17) 1922.4.1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 호외.

18) 「生徒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3414호(1923.12.28).

19) 조선 총독부 관보 제3607호(1924.8.21).

개 경성고등공업학교 工學士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925년 4월에는 본교가 日本文部省의 教員無試驗規定學校로 지정받았다.²⁰⁾

4) 水原高等農林學校

조선 총독부는 1922년 4월에 水原高等農林學校規程을 제정하고 증권의 水原農林専門學校를 水原高等農林學校로 개편하여 農林業에 관한 고등교육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였다. 1922년 4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52호로 제정된 水原高等農林學校規程²¹⁾에 의하면 本校의 수업 연한은 3년이고, 설치 학과는 農學科와 林學科였다. 學科目은 수신, 국어, 영어, 체조 등의 일반학 과목과 전공 과목,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다. 本校에는 選科生과 研究生 제도를 두고, 特科도 들 수 있도록 하였다. 입학 자격을 보면 本科는 男子로서 中學校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5년제 農學校 졸업자나 고등소학교 졸업자를 입학 자격으로 하는 3년제 農學校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로 하고, 特科는 조선인 男子로 구령에 의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歷이 있는 자로 하였다.²²⁾

조선 총독부는 1927년 8월에 本校에 實業補習學校敎員養成所를 설치하여 실업보습학교 교원 양성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1927년 7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70호로 제정된 水原高等農林學校附置 實業補習學校敎員養成所規程²³⁾에 의하면 실업보습학교 교원 양성소는 1년제로 學科目은 수신·교육·法制經濟·농업법규·作物學·원예학·병충해론·농예화학·축산학·양잠학·농업공학·임업·농업경영학·농정학·실험실습으로 하고, 입학 자격은 5년제 農業學校 졸업자로 師範學校 演習科를 졸업한 자, 사범학

교 졸업자로 1년 이상 實業科의 교육에 종사한 자, 5년제 농업학교 졸업자로 1년 이상 小學校나 보통학교의 訓導로 있는 자 등으로 하였다. 本 양성소 재학생에게 學資가 지급되는 대신 졸업자에게 1~2년간의 복무 의무가 부과되었다.

水原高等農林學校는 1932년 4월 4일자 조선총독부령 제37호로 本校規程을 개정하여 각 학과의 學科目을 개편하고²⁴⁾, 1932년 6월 27일자 조선총독부령 제59호로 실업보습학교 교원양성소 규정을 개정하여 學科目을 부분적으로 개편하였다.²⁵⁾ 또한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35년 3월 30일자 조선총독부령 제48호로 실업보습학교 교원양성소 규정을 개정하여 입학 자격에 ‘高等農林學校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농업 교육 기관 졸업자’를 추가하고, 이들에게 과하는 學科目은 수신·교육·국어·조선어·농업·실험실습으로 하도록 하였다.²⁶⁾

조선 총독부는 1936년 3월에 조선총독부 제학교 관제를 개정하여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실업보습학교 교원양성소를 農業敎員養成所로 개편하도록 하였다.²⁷⁾ 이에 따라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36년 7월 13일자 조선총독부령 제54호로 水原高等農林附置 農業敎員養成所規程²⁸⁾을 제정하여 실업보습학교 교원양성소를 농업교원 양성소로 개편하였다. 농업교원 양성소는 1년제로 學科目은 수신·교육·국어·조선어·교육연습·농업에 관한 실험실습으로 하였다. 입학 자격은 고등농림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농업 교육을 위한 학교 졸업자로 하고, 재학생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1~2년간의 복무 의무를 과하였다.

水原高等農林學校는 1937년 4월 17일자 조선총독부령 제52호로 수원고등농림학교 규정을 개

20) 서울大學校 工科大學史 編纂委員會, 서울大學校 工科大學史, 서울工大, 1987, p.9.

21) 1922년 4월 1일자 조선 총독부 관보 호외.

22) 「生徒募集」, 조선 총독부 관보 제3414호(1923.12.28).

23) 조선 총독부 관보 제161호(1927.7.13).

24) 동 제1570호(1932.4.4).

25) 동 제1640호(1932.6.27).

26) 동 제2462호(1935.3.30).

27) 동 제2768호(1936.4.8).

28) 동 제2849호(1936.7.13).

29) 동 제3075호(1937.4.17).

정하여 수의축산학과를 증설하였다.³⁰⁾

5) 京城高等商業學校

조선총독부는 1922년 4월에 京城高等商業學校規程을 제정하여 私立京城商業學校를 官立인 京城高等商業學校로 개편하여 상업에 관한 고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922년 4월 1일자 조선총독부령 제53호로 제정된 경성고등상업학교 규정³¹⁾에 의하면 本校의 수업 연한은 3년이고, 學科目은 수신·국어·영어·상업·作文·상업수학·부기회계학·상업학·상업실습·상업지리·상업사·工學·상품학·法律學·경제학·재정학·통계학·동양경제사정·제2외국어·체조 등이다. 本校에 選科生과 研究生 제도를 두고, 입학 자격은 中學校나 5년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中學校와 등등 이상 정도의 상업학교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 자격 결정 시험 합격자 등이었다.³²⁾

경성고등상업학교는 1928년 9월 13일자 조선총독부령 제64호로 本校의 規程을 개정하여 교과목의 일부를 개편하였다.³³⁾ 경성고등상업학교는 1931년 4월 9일자 조선총독부령 제42호로 本校 規程을 개정하여 學科目에 있어 中學校 출신자와 상업학교 출신자에게 과하는 학과목을 별도로 정하고, 선택 과목을 신설하여 선택 과목은 상업학에 속하는 것, 경제학에 관한 것, 法律學에 관한 것, 어학에 관한 것, 기타 등으로 하였다.³⁴⁾

3. 公立(道立)專門學校의 制度 개요

日帝中期의 高等教育機關에는 道立醫學講習所와 公立醫學專門學校가 있었다. 도립의학강습소는 평안남도(1923)와 경상북도(1924)에 설치되어 中等學校 卒業者를 대상으로 醫師試驗에 대비

한 예비교육을 2~3년간 실시하였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1929년에 道立醫學講習所規程을 제정하여 道地方費로 의사 양성을 위한 의학강습소를 道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兩道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중전의 道立醫學講習所를 경상북도립 대구의학강습소와 평안남도립 평양의학강습소로 개편하여 4년 과정으로 醫師 양성 교육을 계속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3년에 公立·私立專門學校規程에 의거하여³⁵⁾ 兩道立醫學講習所를 대구의학전문학교와 평양의학전문학교 등 公立專門學校로 승격·개편하였다.

1) 道立醫學講習所

평안남도는 1923년 3월 31일자 平安南道令 제7호로 도립의학강습소 규정을 제정하고³⁶⁾, 같은 해 4월에 평양 慈惠醫院內에 평안남도립의학강습소를 부설하였다. 本 의학강습소는 의사시험을 받으려는 자를 양성함을目的으로 하는 2년제의 학교로 教科目은 해부학·조직학·약물학·物理學·生理學·의화학·化學·병리학·법의학·외과학·내과학·안과학·산과학·부인과학·위생학·세균학·조선어 등이었다. 입소 자격은 中學校나 고등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學歷을 가진 자로 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1924년 3월 28일자 경상북도령 제7호로 경상북도립 의학강습소 규정을 제정하여³⁷⁾, 같은 해 4월에 私立大邱醫學講習所를 경상북도립의학강습소로 개편하였다. 본 의학강습소는 3년제로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目的으로 하고, 入所 자격은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男子로 中學校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로 하였다. 본 강습소에는 청강생 제도도 두었다.

경상북도는 1926년 4월 1일자 경상북도령 제

30) 1922년 4월 1일자 조선총독부 관보 호의.

31) 「生徒募集」, 조선총독부 관보 제3414호(1923.12.28).

32) 조선총독부 관보 제515호(1928.9.13).

33) 동 제1275호(1931.4.9).

34) 1922년 3월 7일자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제정된 公立·私立專門學校規程 제1조에 필요한 경우 도지방비로 專門學校를設立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5) 조선총독부 관보 제3195호(1923.4.9).

36) 동 제3488호(1924.4.2).

15호로 강습소 규정을 개정하여³⁷⁾ 본 강습소의 강습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입학 자격에 '전문학교 입학 시험 또는 무시험 검정을 통한 자'를 추가하였다.

한편, 조선 총독부는 1929년 6월에 道立醫學講習所規程을 제정하여 道의 지방비로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강습소를 설치·운영하되,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³⁸⁾ 그리하여 경상북도와 평안남도는 조선 총독부로부터 道立醫學講習所 설치의 인가를 받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여 醫師 양성 교육을 계속 실시하였다.

평안남도는 1929년 4월 1일자 평안남도령 제13호로 평안남도립 평양의학강습소 규정을 제정하였다.³⁹⁾ 본 규정에 의하면, 평양의학강습소는 의사 양성과 의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4년제로 學科目은 수신·국어·독어·영어·수학·物理學·化學·체조 등 일반 교과와 의학에 관한 전공 교과로 하였다. 입학 자격은 中學校나 5년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검정 합격자로 하였다. 또한 본 강습소에도 研究生 제도를 두었다.

경상북도는 1929년 5월 1일자 경상북도령 제8호로 경상북도립 大邱醫學講習所規程을 제정하여 경상북도립 의학강습소를 大邱醫學講習所로 개편하였다.⁴⁰⁾ 大邱醫學講習所는 강습 기간이 4년이고, 教科目은 수신·物理學·化學·독어 등의 일반 교과와 의학에 관한 전공 과목으로 되어 있다. 入所 자격은 中學校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시험 검정 합격자로 하였다.

2) 公立醫學專門學校

조선 총독부는 1933년 3월 8일자 조선 총독부 告示 제76호로 大邱醫學專門學校와 평양의학

전문학교의 設立을 인가하고, 두 公立 의학전문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였으며, 입학 자격은 中學校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시험 검정 합격자, 中學校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등등 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지정받은 자로 하였다.⁴¹⁾ 이상과 같은 규정에 따라 두 도립 의학강습소는 公立醫學專門學校로 개편되었다.

경상북도는 1933년 3월 6일자 경상북도령 제34호로 大邱醫學專門學校 學則⁴²⁾을 제정하여 本校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고, 學科目은 수신·국어 및 조선어·物理化學·독어·체조 등의 科目과 의학에 관한 전공 과목으로 하였다.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의 男子로 中學校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시험 검정 합격자, 中學校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등등 이상의 學歷이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 등으로 하였다. 本校에 研究生 제도를 두어 本校 졸업자는 연구생으로 2년 이내 在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안남도는 1933년 3월 8일자 平安南道令 제1호로 평양의학전문학교 學則을 제정하여 本校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고, 學科目은 大邱醫學專門學校의 학과목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입학 자격과 研究生 제도도 大邱醫學專門學校와 동일하게 하였다.⁴³⁾

4. 私立專門學校의 制度 개요

1922년부터 1938년에 이르는 日帝 中期에 있어 高等教育을 실시한 私立專門學校로 京城치과의학전문학교, 京城藥學專門學校, 普成專門學校, 延禧專門學校,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崇實專門學校, 梨花女子專門學校, 中央佛教專門學校 등의 학교가 있었는 바, 이들 私立專門學校의 制

37) 등 제4107호(1926.4.30).

38) 등 제732호(1929.6.12).

39) 등 제695호(1929.4.30).

40) 등 제718호(1929.5.27).

41) 등 제1847호(1933.3.8).

42) 등 제1855호(1933.3.17).

43) 등 제1856호(1933.3.18).

度의 개요를 학교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1)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1922년 4월 朝鮮總督府醫院內에 京城치과의 학교가 설치되어⁴⁴⁾ 17세 이상의 中等學校卒業者 약 50명(男女)을 매년 모집하여 치과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⁴⁵⁾ 경성치과의 학교는 1929년 2월에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로 승격되어 1929년 4월 1일부터 정규 專門學校로 개편되었는 바, 財團法人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에는 4년제의 本科와 別科, 1년 과정의 研究科를 두도록 하였다.⁴⁶⁾

2) 京城藥學專門學校

약제사 양성 기관으로 설치된 朝鮮總督府指定 朝鮮藥學校는 1925년부터 학생을 모집하여 전문적인 약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藥學을 교수하여 장래 藥劑師가 될 자를 양성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 朝鮮藥學校는 3년제로 매년 약 50명의 학생과 약간 명의 청강생을 모집하여 소정의 教育을 실시하였는 바, 入學資格은 만 17세 이상의 中等學校(中學校·高等普通學校·女子高等普通學校·高等女學校)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學歷을 가진 男女(청강생의 입학 자격은 高等小學校 졸업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學歷를 가진 자)로 하였다. 本校 졸업자에게는 두시험으로 藥劑師의 면허장이 수여되고, 청강생은 약제사 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⁴⁷⁾

朝鮮藥學校는 1929년 10월에 專門學校로 인가받아 1930년 4월 1일 京城藥學專門學校로 승격·개편되었는 바, 본교에는 本科(3년), 別科(3년), 研究科(2년)를 두도록 하였다.⁴⁸⁾ 京城

藥學專門學校는 1930년부터 本科와 別科生 [약 70명씩을 모집하였는 바, 입학 자격은 中等學校 졸업자로 하였다.⁴⁹⁾ 경성약학전문학교는 1936년부터 모집 인원을 100명으로 하고, 입학 자격도 ① 中學校 또는 高等普通學校 졸업자, ② 專門學校 入學者檢定規程에 의한 시험 겸정 合格者, ③ 甲種實業學校 졸업자(男子)로 하였다.⁵⁰⁾

3) 普成專門學校

1921년 12월에 財團法人 普成專門學校가 法律과 商業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을 目的으로 정식 인사를 받음에 따라 각종 학교였던 普成法律商業學校가 1922년 4월 1일 私立普成專門學校로 승격·개편되었다.⁵¹⁾ 普成專門學校는 3년제로 法科와 商科를 두고 法學과 商學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1920년대초의 科別 教科目은 다음과 같다.⁵²⁾

① 法科

修身·日語·법학통론·헌법·行政法·民法·상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파산법·국제법·經濟學·擬律研究·체조

② 商科

修身·日語·법학통론·상업통론·상업정책·상업지리·상업역사·상품학·운행화폐론·부기·상업산술·경제학·운송세관취인·민법·보험학·상업파산법·국제법·통계실천·영어·체조.

普成專門學校는 1925년에 學科別 교과목을 개정하고⁵³⁾, 1937년도에도 교과목을 개편하였다.⁵⁴⁾

보성전문학교는 1925년 4월에 근로 학생을 위한 약학 과정으로 3년제의 朝鮮專修學院을 부설하고, 法律科와 社會科를 두어 소정의 教育을 실시하였다. 고등보통학교 수준의 學力을 가진

44) 서울大學校 二十年史編纂委員會, 서울大學校 二十年史(1946~1966), 1966, p.32.

45) 「生徒募集」(경성치과의학교), 조선 총독부 관보 제3461호(1924.2.29).

46) 1929년 2월 5일자 조선 총독부 告示 제25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627호(1929.2.5).

47) 「生徒募集」(조선약학교), 조선 총독부 관보 제3745호(1925.2.10), 동 제4048호(1926.2.19).

48) 1929년 10월 18일자 朝鮮總督府 告示 제373호—조선 총독부 관보 제838호(1929.10.18).

49) 「生徒募集」(경성약학전문학교), 조선 총독부 관보 제927호(1930.2.6).

50) 「生徒募集」(경성약학전문학교), 조선 총독부 관보 제2707호(1936.1.24).

51) 高麗大學校 70年誌編纂室, 高麗大學校 70年誌, 高麗大學校, 1975, p.77.

52) 위의 책, pp.83~84.

53) 위의 책, pp.88~89.

54) 위의 책, pp.154~156.

자에게 社會科學을 교수할 것을 目的으로 설치된 조선전수학원은 2년간 존속되다가 1927년에 폐지되었다.⁵⁵⁾

4) 延禧專門學校

연희전문학교는 1923년 3월 26일자로 조선총독부로부터 設立 認可를 받았는 바⁵⁶⁾, 설치 학과는 文科·神科·商科 등 3개과였다가 1924년에 數物科를 증설하였다.⁵⁷⁾ 연희전문학교는 1923년에 學則을 개정하고, 1924년 4월, 1929년 2월, 1935년 4월에도 각각 學則을 개정하였는 바, 學則에 의거한 연희전문학교의 制度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⁵⁸⁾

① 目的

朝鮮敎育令에 의하여 文學·神學·商學·數學 및 物理學에 관한 專門教育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② 學生定員

文科 250명, 神科 60명, 商科 150명, 數物科 100명

③ 修業年限

文科·神科·商科는 4년, 數物科 3년

④ 教科目

ㄱ. 文科: 修身·聖書·日語·日文學·漢文學·문학개론·英論(영어·영문학)·歷史·社會學·法制經濟·哲學·心理學·倫理學·논리학·敎育學·自然科學·음악·체조

ㄴ. 神學科: 수신·성서·일어·日文學·한문학·英語·영문학·歷史·사회학·법제경제·哲學·心理學·윤리학·논리학·敎育學·生物學·天文學·지질학·地理學·敎會學(敎會史·敎理學·신앙원리·일요학교)·음악·체조

ㄷ. 商科: 수신·성서·日語·英語·한문·상업문·經濟(경제원론·경제정책·재정학·통계학)·商業(상업지리·상업사·상품학·상업통론·은행 및 화폐론·보험·교통론·세관 및 창고

론·取引所論·상업수학·부기 및 회계학·상업실천)·法學·寫字 및 주산·음악·체조

ㄹ. 數物科: 수신·성서·日語·英語·數學(고등대수학·고등三角·기하학·해석기하·미적분·미분방정식·力學)·天文學·物理學(강의·실험·動力學·電磁氣學)·化學(강의·실험·分析化學·物理化學·전기화학)·전기공학·지질 및 광물학·生物學·축량학·기계제도·공장기계·사회학 및 경제학·敎育학·체조

⑤ 입학 자격

고등보통학교나 中學校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검정 합격자, 조선총독이 지정한 學校 졸업자

⑥ 別科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으로 4년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나 이와 등등 이상의 學歷을 가진 자

⑦ 研究科

수학 연한은 2년.

연희전문학교는 1929년 2월에 學則을 개정하여 數科목의 일부를 개편하고⁵⁹⁾, 1935년 4월에도 學則을 개정하여 理科목을 개편하였는 바, 이 때 선택 과목을 개설한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⁶⁰⁾

5)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1922년 4월 1일 전문학교로 인가받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는 1923년에 學則을 제정하였다.⁶¹⁾ 本 學則에 의하면, 醫學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目的으로 한 本校는 수업 연한이 4년이고, 學科목은 수신·국어·영어·化學·체조 등과 의학에 관한 전문 교과로 되어 있다.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의 男子로 고등보통학교나 中學校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시험 합격자로 되어 있다. 본교에는 研究科, 選科, 別科를 두고 別科의 입학 자격은 17세 이상의 男子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나 이와 등등 이상

55) 위의 책, p.92.

56) 「學校設立認可」, 조선총독부 관보 제3190호(1923.4.2).

57) 연세창립 8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연세대학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p.335.

58) 위의 책, pp.335~346.

59) 위의 책, p.341.

60) 위의 책, p.342.

61) 위의 책, pp.98~102.

의 學歷이 있는 자로 하였다.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는 1931년에 學則을 개정하여 選科와 別科를 없애고, 學科目을 일부 분 개편하였다.⁶²⁾ 本校는 1934년 8월에도 學則을 개정하여 學年을 2學期로 하고, 本校 졸업자를 醫學士라고 칭하게 하였다.⁶³⁾

한편,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는 1931년 6월에 同校의 부속 병원에 산파간호부양성소를 부설하여 산파와 간호부 양성 교육도 실시하였는 바, 본 양성소는 수업 연한이 3년이고, 學科目은 수신·일어·조선어 및 한문·산술·영어·가사·및 재봉·체조 등의 科目과 전공에 해당하는 科目으로 되어 있다. 입학 자격은 16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혼 여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나 고등여학교 2년 과정 수업자 또는 등등 이상의 學歷이 있는 자로 하였다.⁶⁴⁾

6) 崇實專門學校

各種學校였던 崇實專門學校는 1925년 4월 1일 조선 총독부로부터 崇實專門學校로 설립 인가를 받아 정규 전문학교가 되었는 바, 숭실전문학교에는 文科만을 두었다. 崇實專門學校는 1928년 4월에 농과강습소를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농과교육도 실시하였다.⁶⁵⁾

崇實專門學校는 1931년 3월에 조선 총독부로부터 農學科의 설치 인가를 받아⁶⁶⁾ 본교는 文科와 함께 농과를 두어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이때 崇實專門學校의 制度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목적

기독교 지도자의 양성과 學生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여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人間을 양성하는 데에 目的을 두고 있었다.⁶⁷⁾

② 수업 연한

文科 4년, 농학과 3년

③ 학생 정원

文科 160명, 농학과 90명

④ 지원 자격

고등보통학교·中學校·사범학교 졸업자나 전문학교 입학 검정 시험 합격자(별과는 17세 이상으로 高普·각종 中等學校 졸업자 및 4년 수료자)

⑤ 教科目(1934)

ㄱ. 文科: 성경·수신·조선어·한문학·日本語·日本文學·문학개론·영어·영문해석·동양사·서양사·논리학·심리학·윤리학·동양철학·철학사·사회학·교육심리학·교수법·경제원론·정치학·법학통론·生物學·天文學·영국문학사·미국문학사·음악·체조

ㄴ. 農學科: 성경·수신·日語·영어·수학·物理學·기상학·유기화학·무기화학·지질학·토양학·식물학·식물병리학·동물학·곤충학·作物學·육종학·비료학·원예학·양잠학·세균학·축산학·가축사양학·농산제조학·수의학·낙농학·농업경제학·농정학·유전학·농구학·농업토목학·생리화학·체조

崇實專門學校는 1935년에 學則을 다시 개정하여 學年을 3學期제로 하고, 입학 자격과 퇴학 사유,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다.⁶⁸⁾

崇實專門學校는 1930년대에 와서 고등농사학원을 부설하여 농업에 관한 단기 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수용 인원은 90명이고, 매년 여름철에 3개월간 농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매년 3개월씩 3년간에 그 과정을 수료하도록 하다가 1936년부터는 하루 3시간이던 강습 시간을 6시간으로 늘이는 대신 수업 연한을 1년으로 단축하였다.⁶⁹⁾ 고등농사학원에서 가르친 教科目은 과수·비료·식물병리 및 약제·토양·소체·양계

62) 위의 책, p.104.

63) 위의 책, p.98.

64) 위의 책, pp.145~147.

65) 숭실대학교 9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90년사,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7, p.135.

66) 1931년 3월 11일자 朝鮮總督府 告示 제121호 조선 총독부 관보 제1252호(1931.3.11).

67) 金鐘喆 外, 韓國高等教育의 歷史的 变遷에 관한 研究,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9, p.155.

68) 숭실대학교 90년사, pp.149~150.

69) 위의 책, pp.58~60.

· 양돈·해충·음악·실습 등이었다.⁷⁰⁾ 崇實専門學校는 1938년 3월에 폐교되었다.

7) 梨花女子專門學校

梨花學堂은 1925년 4월 23일 조선 총독부로부터 專門學校 인가를 받아 大學科를 梨花女子專門學校로 개편하여 5년제의 文科(예과 1, 본과 4)와 4년제의 음악과(예 1, 본 3)를 두었다가⁷¹⁾ 1929년 4월부터 家事科(예 1, 본 3)를 증설하였다.⁷²⁾ 梨花女子專門學校의 制度는 다음과 같다.

① 目的

學生들로 하여금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人材를 기르는 데 目的 을 두었다.⁷³⁾

② 설치 학과와 수업 연한

文科 5년, 음악과 4년, 家事科 4년으로 했다가 1930년 학제 변경으로 文科의 수업 연한을 4년(예 1, 본 3)으로 하였다.⁷⁴⁾

③ 教科目

1925년의 學科別 教科目은 다음과 같다.⁷⁵⁾

ㄱ. 文科 : 수신·성경·日語·한문(선택)·영어·수학·地文·歴史·법제경제·지질 및 천문학·미술학·철학·生物學·心理學·社會學·敎育學·敎育史·敎수법·가정학·위생학·창가·체조

ㄴ. 음악과 : 수신·성경·일어·영어·음악이론 및 작곡법·화성학·청음 및 시창법·對位法·음악감상법·음악사·譜記法·합창·敎育학·美學·피아노·체조

1930년도의 교과과정은 계통과 과목으로 되어 있는 바, 學科別 계통과 과목은 다음과 같다.⁷⁶⁾

ㄱ. 文科 : 生物(生物學)·敎育(敎育사·과학

교육개론·敎育심리학·영어敎수법과 교생실습·영어문학·윤리·가정학·체육·일어·한문·수학·음악·철학·심리학·종교·사회과학(정치학·경제학·歴史)

ㄴ. 음악과 : 피아노·성악·바이올린·컨서트·한국음악·이론·歴史·敎育·일어·영어·국한문·종교·윤리·예술·체육

ㄷ. 가사과 : 의류·食·건강·가내공업·주택·과학·사회·敎育·영어·일어·한국어·윤리·종교·음악·체육

1936년도의 科別 學科目은 다음과 같다.⁷⁷⁾

ㄱ. 文科 : 수신·성경·일어·조선어 및 한문·영어·문학개론·敎育·심리학·논리학·철학개론·歴史·미학 및 미술사·法制·경제·사회학·자연과학·가정학·음악·체조

ㄴ. 음악과 : 수신·성경·일어·조선어 및 한문·영어·기악·성악·작곡·음악이론·음악사 및 음악감상법·敎育·가정학·체조

ㄷ. 가사과 : 수신·성경·일어·조선어 및 한문·영어·理科·가사·敎育 및 심리학

④ 입학 자격

1928년도 과정별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⁷⁸⁾

ㄱ. 營科 : 4년제 高等女學校나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 4년제 고등여학교나 여자고등보통학교 今年 3월 졸업 예정자

ㄴ. 本科 : 營科 졸업자, 4년제 高等女學校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

ㄷ. 別科 : 만 17세 이상의 女子로서 働조선교 육령에 의한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研究科

本校 졸업자로 이미 배운 學科目을 더욱 연구

70) 위의 책, p.138.

71) 鄭忠良, 梨花八十年史, 梨大出版部, 1967, p.147.

72) 조선 총독부는 1929년 2월 8일자 조선 총독부 告示 제28호로 梨花女子專門學校에 家事科를 증설하고, 수업 연한은 예과 1년, 본과 3년으로 하도록 하였다(조선 총독부 관보 제630호, 1929.2.8).

73) 梨花八十年史, p.148.

74) 위의 책, p.150.

75) 위의 책, pp.159~160.

76) 위의 책, pp.160~162.

77) 梨花女子專門·梨花保育學校一覽(昭和 12년), pp.14~18.

78) 위의 책, p.169.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研究科를 두되, 수업 연한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고, 수업 기간 마감 때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수료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였다.⁷⁹⁾

⑥ 選科

각 과의 學科目 중 한 과목 또는 몇 과목을 선택 學修하려는 자를 선과생으로 入學을 허가하고, 과정 수료자에게 수료 증서를 수여하게 하였다.⁸⁰⁾

8) 中央佛教專門學校

조선 총독부는 1930년 4월 11일자 朝鮮總督府 告示 제186호로 專門學校令에 의하여 中央佛教專門學校의 설치를 인가하고, 불교에 3년제의 本科·特科·選科를 두도록 하였다.⁸¹⁾ 이에 따라 종전의 佛教專修學校가 中央佛教專門學校로 개편되었는 바, 불교는 다음과 같은 學制에 따라 教育을 실시하였다.⁸²⁾

① 目的

조선교육령에 의하여 佛教學 및 東洋文學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② 設置課程과 수업 연한

本科·特科·選科를 두며 수업 연한은 각 3년

③ 學生定員

150명

④ 學科目

佛教學·佛教史·宗敎學 및 宗敎史·倫理學 및 倫理史·哲學 및 哲學史·敎育學 및 敎育史·法

制 및 經濟·社會學·漢文 및 朝鮮文學·國語 및 國文學·영어·음악·체조

⑤ 入學資格

身體 강건하고 品行 方正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ㄱ. 고등보통학교 또는 中學校 졸업자

ㄴ.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시험
검정 합격자

ㄷ.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指定
學校 졸업자

⑥ 退學

性行不良하여서 改悛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學力 劣等하여 成業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出席이 무상한 자, 期日內에 수업료를 納付하지 않은 자는 退學을 命함

⑦ 정벌

學則에 배반하거나 기타 부정 행위를 하였을 때는 情狀에 따라 憲책·정학 또는 퇴학을 명함

⑧ 特科

學科目은 本科와 같으나, 영어를 수의과로 하고, 검정 시험을 실시하여 수학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학하도록 하되, 검정 시험 과목은 國語·數學·東洋史·漢文으로 하고, 졸업자에게 특과 졸업 증서를 수여함

⑨ 選科

승려로서 本校의 學科課程 중 불교에 관한 과목의 學修를 원하는 자를 選科生으로 入學시키 선과를 修業한 자에게 수업 증서를 수여한다.*

79) 위의 책, p.216.

80) 상동, 연구과와 선과는 1936년부터 설치하였다.

81) 「告示」, 조선 총독부 관보 제979호(1930.4.1).

82) 東大 七十年史刊行委員會, 東大 七十年史,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6, pp.297~300.